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rina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819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5. 5. 1. 시행)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를 시·도지사에게 조속히 이양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예정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사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“지방해양수산청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뒷면 제4호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하며, 같은 서식 제5호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확인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지방해양수산청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사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“지방해양수산청”을 각각 “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사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“지방해양수산청”을 각각 “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 (생략)	제3조(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	② <u>관리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